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구제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개정,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노출과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안 제12조 개정)

질환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단일 위원회에서 다양한 질환을 검토해야 하므로 위원 인원수를 현행 30

명 → 50명으로 증가함

다. 재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 심사와는

다른 위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함(안 제12조의2)

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만료 또는 갱신해야 하는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안 제18조)

마.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초고도장해부터 경도

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하여 약 2,900만원 ~ 14,400만원을 일시금으

로 지급함

바.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38배로 상향함(안 제22조)

사. 구제급여 항목 중 요양급여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질환별 판정하던 것을 통합 판정하도록 조사판정체계 개편(별표1)

자.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별표2)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35%인 피해자

에게 약 월 143만원을 지급하고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

능이 정상인 대비 70~80% 수준인 피해자에게도 약 월 12.6만원을

지급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란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연구를 말하며 환경부장관은 조사 및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과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제5조제1항제3호 중 “피해구제위원회에서”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문위원회(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

사판정전문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환경부장관이 각각”을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의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피해등급”을 “피해등급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4조의2제5항 본문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을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를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건강피해를 확인하는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

로,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구제급여 지급신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저소득자”란 인정신청자”를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의”를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의”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의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그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양비”를 “요양비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험급여”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해급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장해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2조제1항 중 “1천500”을 “3천800”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아니한”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을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당이득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3장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자금”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각각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제1항 제1호 중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을 “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긴급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긴급의료지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긴급의료지원 신청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슴기살균제 노출과 긴급의료지원 신청자의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발생 또는 악화 간에 관련성이 인정될 것
2.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의료적 긴급성이 확인될 것
3. 긴급의료지원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할 것

제38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1. 통계청

제39조제1항제1호 중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2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를 “지급을”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나.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등에 관한 업무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제42조제1항제2호(중전의 제1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접수”를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또는 지급요청 신청 접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10조제4항”으로, “구제급여”를 “진찰·검사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청구자료 등을 활용한 진단이력 확인 및 구제급여 지급여부·피해등급 결정을 위한 신속한 심사의 지원

4. 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급여·비용·경비·지원금액의 지급 및 차입금·이자의 상환

1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관리 및 운용

제43조제2호 및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4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특별유족조위금 상향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을 받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전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장의비의 100분의 1천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재심사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제17조제1항 관련)

1.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정도 등 노출 양상과 노출과 질환 간 시간적 선·후 관계, 노출 전·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노출 전 건강 상태, 진단 이력,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다.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가. 가습기살균제에 건강피해 피해등급은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날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 중 다음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임상경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노력성 폐활량(FVC)
- 2) 1초량(FEV1)
- 3) 폐확산능(DLco)

나. 가목 1)부터 3)까지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피해등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검사 결과에 따른 피해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해 정도가 가장 높은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검사방법 피해등급	노력성 폐활량 (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초고도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미만
고도피해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정상 예측치의 35% 이상 45% 미만
중등도피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경도피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경미한피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등급 외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비고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피해등급	요양급여 금액	요양생활수당 금액
초고도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 2.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
고도피해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2)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 2.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
중등도 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 2.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
경도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경미한 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 득(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 한다)의 1,000분의 42에 해당하 는 금액
등급 외		미지급

비고

1. 가슴기살균제 피해자가 지정하는 병원의 통원에 소요되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
활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교통비 지급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2. 구급차 이용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정한다.
3. 장거리 교통비 및 구급차 이용비용은 신청한 날이 포함되는 달에 지급한다.

[별표 4]

장해급여의 금액 및 지급방법(제21조의2제1항 관련)

장해등급	장해내용	노동력 상실률	급여금액
초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48,000에 해당하는 금액
고도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8,800에 해당하는 금액
중등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9,200에 해당하는 금액
경도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애가 남은 자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9,60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1. 장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장해내용을 위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u> <u>「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u> <u>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u> <u>2.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 결과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u> <u>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u> <u>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u>	<u>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u> <u>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란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연구를 말하며 환경부장관은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u> <u>1. 역학조사</u> <u>2. 건강모니터링</u> <u>3. 그 밖에 코호트 조사, 독성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과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u> <u>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u> ----- -----

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의 장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5항
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폐질환조사판정전
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
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삭제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
장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중
에서 환경부장관이 각각 임명한
다.

-----.

1. 2. (현행과 같음)

3.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
호까지의 규정-----
-----.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
-----위원-----
--- 환경부장관이 -----
--.

<신 설>

5.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
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가습
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
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것인
지에 관한 사항

⑦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및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문위원회에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
----- 전문위원회-----

-----.

----- 그
렇지 않다.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

[illegible]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 피해자 또는 유족

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

는 사람은 ---- 바에 따라 구제

급여 지급신청서 -----

----. -----

----- 해야 -----

----- 해야 -----.

2. 삭 제

3. 삭 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정신청자로서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해당 인정신청자에 대한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해당 인정신청자를 통보하고 인정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② -----
----- “지급신청자”-----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

----- 건강피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
-----.

<삭 제>

인정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가습

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

지 못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인정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에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
득자”란 인정신청자 중 해당 신
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생략)

제17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
정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
0조제5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④ ----- 지급신청자----

-----.

⑤ -----
----- 구제급여 지급
신청-----
-----.

제16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의 지원) ① -----
----- 저소
득자“란 지급신청자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
----- 구제급여 지급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은 별표 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
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
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
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
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법 제
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하여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신 설>

결정 기준 -----
-----.

② -----
-----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
준 및 -----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의 ---

----- 고려해야 -----.

1. (현행과 같음)

2.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
사전문위원회-----

4. ----- 구제급여 지급
결정-----

제17조의2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
급여 지급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
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제18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의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그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10년-----.

② -----
----- 가습기살균제 -----

-- 제출해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

당) ① (생 략)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가습기살균제 -----

-----.

2. 가습기살균제 -----

-- 요양비 또는 제51조에 따
른 보험급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신설>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장해급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장해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 -----

----- 3천800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

----- 신청해야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
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계
정운용위원회가 해당 신청자에
대한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지
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
제계정운용위원회에 해당 내용
을 통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가습
기살균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
유족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24조(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절차

-----해야-----
-----않는-----

- 해야 ----.

<삭 제>

<삭 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의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
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그 신청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1
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
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
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

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 제1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_____

_____가

습기살균제

_____.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
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
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
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
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환
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

-----.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
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을 말한다.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당이득 금
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삭 제>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
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
다)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2호 또는 제8호
에 따른 특별구제계정 지원의
인정 접수·검토 및 확인

2.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급여
·비용·경비·지원금액의 지
급 및 차입금·이자의 상환

3.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방법
에 따른 관리 및 운용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6
항에 해당하는 환수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
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
게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
지 환수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
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생략)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

-----.

1. 환경부-----
-----.

2. (현행과 같음)

② -----

---- 구제자금운용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
-----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

-----.
-----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제32조(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의 인정기준 등) 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에의 노출과 인정신청자의 건강상의 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될 것
2.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상의 피해 발생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될 것
3. 건강상 피해의 정도가 중증(重症)이거나 지속적일 것

②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할 때

--.

제32조(긴급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긴급의료 지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의료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긴급의료 지원 신청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법 제32조제8호가목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급여 지급 대상자는 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조정신청서에 급여조정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급여의 추가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

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긴급의료지원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발생 또는 악화간에 관련성이 인정될 것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의료적 긴급성이 확인될 것
3. 긴급의료지원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할 것

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
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조정 기간
에서 제외한다.

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
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
계 기관·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1. ~ 6. (생 략)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
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
유, 상태의 호전 등 가습기살
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하
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

-----.

1. 통계청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② -----
----- 신고해야 -----

-----.

1. (현행과 같음)

2. -----
----- 구제급여
지급결정-----

--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략)
- ② (생략)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

1. ----- 구제급여 지급결정-----

2. 법 제22조-----
----- 지급을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
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
에 관한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
정신청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다.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
족인정 신청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3.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나.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
족인정 신청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
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등에
관한 업무

<삭 제>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u>특별구제계정</u>에서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u>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u>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u>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u> 3. (생략) ⑥·⑦ (생략)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u><신설></u> 1.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u>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u> 및 <u>피해등급의 마련</u>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u>가습</u>	-----. 1. ----- <u>피해구제자금</u>----- ----- 2. ----- ----- ----- ----- <u>구제급여 지급결정</u> <u>을 받지</u> ----- ----- <u>구</u> <u>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u> -----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 1.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u>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u> 2. ----- <u>구제</u> <u>급여의 지급결정 기준</u> ----- ----- 3. ----- <u>구제</u>
--	--

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3. 4.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
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접수, 진찰·검사 비
용 지급신청 접수 및 신청 내
용의 검토·확인

<신 설>

2. 3. (생략)

<신 설>

4. 법 제2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의 검토·확인

급여 지급결정 기준-----

--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법 제33조제3
항 및 같은 법 제42조제2항---

--.

1. -----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또는
요청 신청 접수,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강
보험공단청구자료 등을 활용
한 진단이력 확인 및 구제급
여 지급여부·피해등급 결정
을 위한 신속한 심사의 지원

5. 6.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통지

3. 법 제10조제4항-----
-- 진찰·검사 비용 ---

5. (생략)

<신설>

6. (생략)

<신설>

<신설>

7. 8. (생략)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33조 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9. (현행 제6호와 같음)

10.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급여·비용·경비·지원금액의 지급 및 차입금·이자의 상환

1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관리 및 운용

12. 13.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에 따른 <u>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u> 등에 관한 사무	2. ----- <u>구제급여 지급결정</u> ----- -----
3. 법 제11조에 따른 <u>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u> 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 <u>구제급여 지급결정</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u>구제급여의 지급</u> 등에 관한 사무	5. <u>법 제22조</u> -----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제44조(이행강제금) ① ~ ⑤ (생략)	제44조(이행강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56